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36 발의연월일: 2022. 7. 1.

발 의 자 : 김승남 • 김민철 • 김영호

김용민 · 송기헌 · 신정훈

유정주 • 윤관석 • 이형석

전해철 · 정태호 · 최종윤
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 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,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'알박기 텐트'가 증가하고 있음.

이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인 해수욕장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 점용함으로써,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 수욕장과 그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, 그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 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「자연공원법」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,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방치된 물건등의 제거)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(이하 이 조에서 "물건등"이라 한다)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, 「행정대 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 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연 행 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방치된 물건등의 제거)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(이하 이조에서 "물건등"이라 한다)을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.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해수욕장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,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	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

<u>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